



제 41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17호)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89호)
- 황명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99호)
- 어기구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72호)

2024.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신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10
1. 개정안의 개요	10
2. 조문별 검토	11
가. 목적규정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등 명시	11
나. 밀·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	13
다. 양곡수급계획 포함 사항 및 수립 관련 절차 변경	16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 마련	27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31
바. 의무수입양곡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34
사. 미곡의 매입·판매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화	38
아. 인용 법률 제명의 현행화	47
자. 양곡 가격 결정 관련 제도 신설	49
차.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설치	58
카.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규정 마련	74
타. 양곡 생산자 관련 단체 설립 근거 규정 마련	80
파.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근거 마련	82
하. 양곡유통업의 육성 근거 마련	87
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등 규정	89

I .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안(2200017)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이원택의원안(2200089)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3.

다. 회 부 일 : 2024. 6. 11.

3. 황명선의의원안(2200299)

가. 제 안 자 : 황명선의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6. 11.

다. 회 부 일 : 2024. 6. 12.

4. 어기구의의원안(2200572)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18.

다. 회 부 일 : 2024.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안(2200017)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밀·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차.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 근거와 미국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제16조의6 신설).

카. 미국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2. 이원택의원안(2200089)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적정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곡의 일부 품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

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3. 황명선의원안(2200299)

제안이유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이나 가격 등이 하락하는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농가 재배면적의 47% 수준을 차지하는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불안정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쌀값 안정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정적인 양곡 수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주

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국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4. 어기구의원안(2200572)

제안이유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다.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개요

총 4건의 개정안은 쌀 생산의 과잉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의무적 시장격리, 양곡의 시장가격과 기준 가격 간의 차액 보전,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같은 취지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5건¹⁾은 대안(의안번호 2126705)으로 통합·조정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의결(2024. 2. 1.)되었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2024. 4. 18.) 및 국회법 제8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2024. 5. 28.)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음(2024. 5. 29.).

1) 의안번호 2120974,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276,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36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285,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583,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603,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078,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232,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635, 여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885,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13,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374,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431,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395,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405, 최춘식의원 대표발의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규정에 양곡의 적절한 가격 유지 등 명시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양곡의 적절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황명선의의원안 제1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 은 양곡의 효율 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 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함으로써 국민경 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확보</u> <u>하고 생산자의</u> <u>이익을 보호하며</u> <u>양곡의 적절한</u> <u>가격을 유지함으</u> <u>로써 식량안보와</u> <u>식량자급률을 제</u> <u>고하고 농업의</u> <u>지속가능과</u> --- -----.	제1조(목적) ---- ----- ----- ----- ----- ----- <u>확보</u> <u>하고, 적정가격</u> <u>을 유지함으로써</u> <u>식량자급률을 제</u> <u>고하고 농업의</u> <u>지속가능과</u> --- -----.	제1조(목적) ---- ----- ----- ----- ----- ----- <u>확보</u> <u>함으로써 식량안</u> <u>보 및 식량주권</u> <u>을 확보하고</u> -- -----.

현행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식량인 양곡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공공비축제도 운영, 수입양곡 관리 등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적절한 가격의 유지, 식량안보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 법의 목표를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강은미의원안(의안번호 2121276),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2123232),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23885), 안호영의원안(의안번호 2124431), 최춘식의원안(의안번호 2125405)에 대해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도 균형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나. 밀·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

현행법은 공공비축양곡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밀과 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과 콩을 공공비축양곡의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황명선의원안·여기구의원안 제2조제3호).

현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 이란 양곡부족 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 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 하는 <u>미곡과 대</u> <u>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양곡</u> 을 말 한다.	3. ---- ----- ----- ----- ----- ----- ----- ----- ----- --- <u>미곡·밀·</u> <u>콩</u> ----- -----.	3. ---- ----- ----- ----- ----- ----- ----- ----- ----- --- <u>미곡, 밀 및</u> <u>콩과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양곡</u> -----.	3. ---- ----- ----- ----- ----- ----- ----- ----- ----- --- <u>미곡·밀·</u> <u>콩과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양곡</u> -----.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가 2005년도에 도입되었고²⁾,

2013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가 비축하는 공공비축양곡 매입 대상 품목을 ‘쌀’ 이외에 국내 소비량이 많아 식량안보상 비축 필요성이 높은 ‘밀’과 ‘콩’을 추가하였음³⁾.

<밀 생산·소비 현황>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p)
면적(ha)	7,373	7,180	10,076	10,440	9,283	6,600	3,736	5,224	6,224	8,259
단수(kg/10a)	259	326	262	371	403	391	402	325	423	406(p)
생산량(톤)	19,061	23,409	26,433	38,705	37,425	25,788	15,024	16,985	26,324	33,532(p)
식량자급률(%)	0.9	1.1	1.2	1.8	1.7	1.2	0.7	0.8	1.1	1.4(p)
비축물량(톤)	-	-	-	-	-	-	10,201	853	8,401	16,561
1인당 연간 소비량(kg)	31.3	31.7	32.2	32.1	32.4	31.6	31.6	31.2	36.9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콩 생산·소비 현황>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p)
면적(ha)	80,031	74,652	56,666	49,014	45,556	50,638	58,537	55,008	54,444	63,956
단수(kg/10a)	193	187	183	154	188	177	180	147	203	203
생산량(톤)	15,407	13,927	10,304	7,548	8,564	8,910	10,340	8,026	11,071	12,925
식량자급률(%)	29.6	35.9	32.1	24.6	22.0	25.5	26.7	30.4	23.7	-
비축물량(톤)	8,944	9,404	11,424	2,114	10,729	547	16,767	557	2,248	18,697
1인당 연간 소비량(kg)	7.9	8.1	8.2	8.0	5.4	6.3	6.6	6.5	6.4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 WTO 허용보조요건은 시가매입·시가방출

3) 최초 도입 당시에는 매입대상 품목이 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입대상 품목에 국내 소비량이 많아 식량안보 상 비축 필요성이 높은 밀과 콩을 추가하였음.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 중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밀’과 ‘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밀·콩의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긍정적 신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양곡수급계획 포함 사항 및 수립 관련 절차 변경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여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계획의 대상을 정부관리양곡에서 양곡으로 확대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양곡의 적정 자급 목표, 양곡의 운용 및 적정 재고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며, 동 계획을 고시한 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황명선의의원안·여기구의의원안 제3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 -----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 -----.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 -----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 -----.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② ----- ----- ----- -----.	② ----- ----- ----- -----.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1. 양곡----- -----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 -----
2. <u>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u>			2. <u>양곡</u> ----- -----
3. <u>공공비축양곡 의 운용에 관한 사항</u>	3. <u>공공비축양곡 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u>	3. (현행과 같음)	3. <u>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u>
<신 설>	4.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u> 」 제14조 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 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4.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u> 」 제14조 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및 적정 가격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 와 같음)	5. (현행 제4호 와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u>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양곡수 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 확정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③ ----- -----제16조 의3에 따른 양곡 수급 관리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 계획을 세운 경우 -----거친 후----- -----.	③ ----- ----- 제1항 에 따라 양곡수급 계획을 세운 후 ----- ----- 거처 ----- ----- -----.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어기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④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은 제3항 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u>고시하여야 한다.</u>	④ ----- ----- ----- ----- ----- ----- <u>고시하여야 하고,</u> <u>지체 없이 국회</u> <u>소관 상임위원</u> <u>회에 제출하여야</u> <u>한다.</u>	④ ----- ----- ----- ----- ----- ----- <u>고시하고, 지체</u> <u>없이 국회 소관</u> <u>상 임 위 원 회 에</u> <u>보고하여야 한다.</u>	④ ----- ----- ----- ----- ----- ----- <u>고시하여야 하고</u> <u>지체 없이 국회</u> <u>소관 상임위원</u> <u>회에 제출하여야</u> <u>한다.</u>

(1) 양곡수급계획의 대상 확대 및 양곡의 운용 관련 사항 추가 등

최근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벼재배농가의 소득이 하락
(10a당 쌀소득: 2021년 78만 6천원 → 2022년 60만 6천원)하였는데,

이와 같은 양곡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양곡의 생산량·
소비량 외에 공공비축양곡·수입양곡의 재고량 및 민간의 양곡 재고량
등이 지적된 바 있음.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
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매년
35~45만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있으며,

수입양곡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1995~2014) 및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에 따라 매년 정해진 물량(40만 9천톤)만큼을
정부가 수입하여 정부관리양곡으로 관리하고 있음.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2019~2022년) 및 계획(2023년)>

(단위: 톤, 원/kg, 백만원)

공공비축양곡		미국 ¹⁾		밀 ²⁾	콩 ³⁾
		포대벼	산물벼		
2019	매입량(톤)	269,767	80,231	10,201	16,767
	매입단가(원/kg)	2,375		975	4,500
	매입금액(백만원)	996,946		9,924	73,993
2020	매입량	249,328	81,744	853	557
	매입단가	2,637		975	4,500
	매입금액	875,333		859	2,821
2021	매입량	257,078	92,899	8,401	2,248
	매입단가	2,677		975	4,700
	매입금액	913,080		8,117	11,722
2022	매입량	322,000(p)	128,000(p)	16,561	18,000(p)
	매입단가	2,341		975	4,700
	매입금액	1,017,375(p)		17,503	84,000(p)
2023	매입계획량	400,000		20,000	25,000
	매입예상단가	2,344		975	4,800
	매입예산	1,037,545		24,499	120,335

* 2019~2021년 결산 기준/ 2022년매입실적 잠정치 작성/ 2023년 예산 기준

1) 미국: 미국매입가격은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2) 밀: (매입량·매입금액) 2019~2022년 해당연도 국산 밀 매입 및 정산 결과 기준(aT), 2023년 예산 기준 / (매입단가) 국산 밀 양호 기준

3) 콩: 연산 기준으로 작성, 매입금액은 물품대 기준, 매입단가는 대립 특종 기준 수매단가 기재, 2022년산은 현재 수매 진행 중으로 추정 수치 기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비축한 정부관리양곡의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총 116만톤 규모로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정부관리양곡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정부의 추가적인 양곡 매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정부의 재고 방출 가능성에 대한 민간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음.

<최근 3년간 정부관리양곡 재고 현황>

(단위: 천톤)

구분	2020	2021	2022
국내산	502	182	683
수입산	478	568	472
합계	980	750	1,15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산지유통업체 등 민간에서도 쌀을 비롯한 양곡 등을 상당한 규모의 재고로 비축⁴⁾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의 양곡 보관 비용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산지 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개정안⁵⁾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수급계획의 대상을 정부관리양곡에서 양곡으로 확대하고, 양곡 등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곡의 재고 등을 관리함에 있어 식량안보와 양곡의 가격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취지로 보임.

4) 현재('24.5.30. 기준) 농협·민간 RPC 재고량 : 775천톤(전년비 265천톤↑, 평년비 208천톤↑)

5) 윤준병의원안 및 황명선의의원안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강은미의원안(의안번호 2121276),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2123232), 어기구의원안(의안번호 2123635),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23885), 안호영의원안(의안번호 2124431)에 대해서,

① 정부관리양곡⁶⁾은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현행법 제3조제2항제1호·제2호⁷⁾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의 내용과 개정안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고,

② 양곡의 용도별 운용 사전계획 수립은 수급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2024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일부 발췌>

가. 쌀

(1) 공급량 : 2,139천톤

○ 전년 이월량 1,330천톤,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390천톤, 해외공여용(APTERR) 매입 10천톤, 수입쌀(TRQ) 409천톤

(2) 수요량 : 830천톤

○ 군관수용 32천톤, 일반판매용 20천톤, 가공용 500천톤, 공공용 150천톤, 원조용 103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 1,309천톤

6) 정부관리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의미

7) 「양곡관리법」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양곡수급계획에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추가 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발생하여 2022년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⁸⁾가 159.7포인트에 도달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바 있음.

<연도별 세계식량가격지수>

연도		식량가격 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2018		95.9	94.9	107.3	100.8	87.8	77.4
2019		95.1	100.0	102.8	96.6	83.2	78.6
2020		98.1	95.5	101.8	103.1	99.4	79.5
2021		125.7	107.7	119.1	131.2	164.9	109.3
2022	1월	135.6	112.1	132.6	140.6	185.9	112.7
	2월	141.2	113.9	141.5	145.3	201.7	110.5
	3월	159.7	119.3	145.8	170.1	251.8	117.9
	4월	158.4	121.9	146.7	169.7	237.5	121.5
	5월	158.1	122.9	144.2	173.5	229.2	120.4
	6월	154.7	125.9	150.2	166.3	211.8	117.3
	7월	140.6	124.1	146.5	147.3	168.8	112.8
	8월	137.6	121.1	143.4	145.6	163.3	110.5
	9월	136.0	120.3	142.7	147.9	152.6	109.7
	10월	135.4	116.8	139.3	152.3	151.3	108.6
	11월	134.7	114.6	137.4	150.1	154.7	114.4
	12월	131.8	112.4	138.2	147.3	144.6	117.2
	(평균)	143.7	118.8	142.4	154.7	187.8	114.5

8)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등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을 지수로 만들어 발표하는 것으로, 현재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02~2004년 식량가격의 평균치를 100으로 설정하여 지수로 표현한 것임.

연도		식량가격 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2023	1월	130.2	111.1	134.5	147.5	140.4	116.8
	2월	129.8	113.3	129.4	146.7	135.9	125.2
	3월	127.0	114.7	126.8	138.6	131.8	127.0
	4월	127.7	116.8	122.6	136.1	130.0	149.4
	5월	124.2	118.1	117.8	129.3	118.7	157.2
	6월	122.4	118.1	116.7	126.6	115.8	152.2
	7월	123.9	117.8	116.3	125.9	129.8	146.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0.5%에 불과하여 주요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국내 식량상황에 중대한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최근 5년간 식량자급률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합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2017	48.7	103.4	26	1.7	3.3	22	105.3
2018	46.9	97.3	32.1	1.2	3.3	25.3	105.6
2019	45.8	92.1	47.7	0.7	3.5	26.7	105.2
2020	45.8	92.9	38.2	0.8	3.6	30.4	105.6
2021	40.5	84.6	33.3	1.1	4.2	23.7	105.1

※ 자료 :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이에 개정안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수급계획 수립 시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요 양곡에 대하여 적정 자급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강은미의원안(의안번호 2121276),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2123232), 어기구의원안(의안번호 2123635),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23885), 안호영의원안(의안번호 2124431)에 대해서,

양곡수급계획에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요 양곡에 대한 적정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제14조¹⁰⁾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9)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및 어기구의원안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3)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의 국회 제출·보고 의무 규정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i)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울 때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¹¹⁾ 혹은 심의¹²⁾를 거치도록 하고,

ii) 동 계획을 고시한 후에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¹³⁾ 혹은 보고¹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i) 양곡수급안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며,

ii)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동 계획의 체계적 수립 여부 등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11) 이원택의원안 및 어기구의원안

12) 윤준병의원안 및 황명선의원안

13) 윤준병의원안 및 황명선의원안

14) 이원택의원안 및 어기구의원안

발의되었던 강은미의원안(의안번호 2121276),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2123232), 어기구의원안(의안번호 2123635),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23885), 안호영의원안(의안번호 2124431)에 대해서,

i) 양곡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수급정책의 탄력적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ii) 동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 마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9조의3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u> ④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현 행	윤준병의원안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6. (생 략) ② (생 략)	제36조(과태료) ① ----- ----- -----.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 3. (생 략) 4. ~ 9.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정부관리양곡은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부양곡 보관을 희망하는 농협·개인소유 창고¹⁵⁾ 중에서 시설물안전진단 B등급 이상인 창고를 대상으로 3년 단위로 정부양곡 보관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 중임.

그런데 현재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83%인 2,498동이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양곡창고¹⁶⁾이고,

정부관리양곡 보관에 사용해 온 1,636동 중 686동이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아 정부양곡 보관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15) 정부양곡 보관계약 창고 3,134동 중 농협창고는 1,637동(2022년 4월 기준)

16) 2022년 8월 기준

<건축 경과 별 농협 양곡창고 현황>

연 도	10년 이하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계
창고수(동)	167	132	209	2,498	3,006
비율	5.6%	4.4%	7.0%	83.1%	100%

※ 자료 : 농협중앙회

그러나 양곡창고의 신축 또는 개보수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낮아 농협 및 개인이 양곡창고의 신축 또는 개보수에 적극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정부는 정부양곡 보관계약을 체결한 창고에 대해 노후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 및 정부양곡 품질 제고를 추진 중¹⁷⁾이며,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양곡창고 시설현대화를 위해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노후화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점검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실태 점검을 위하여 「양특회계 사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¹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양곡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지침을 근거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등급의

17) (지원금액/금리/상환조건) 100억원(개소당 2~4억원) / 연 2% / 2년 거치 3년 균분

18) 「양특회계사무규정」

제59조(재고조사) 물품의 재고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에 의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재고조사는 연 2회 3월말·10월말 기준으로 실시하고, 임시재고조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할 수 있다.
2. 재고조사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관시설의 실태점검 및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9조의4).

현 행	윤준병의원안
<u><신 설></u>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제36조(과태료) ① ----- ----- -----. 1. (생 략)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현 행	윤준병의원안
1. ~ 6.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4. ~ 9.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부터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추진 목적	- 정부양곡의 보관, 가공, 운송, 공급 등 관리 전반을 자동화·전산화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도모
예산(백만원)	(’20) 4,397 → (’21) 1,171 → (’22) 462 → (’23) 574 → (’23) 574
사업시행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발·운영 현황	개발사업자 선정(’20.6.) → 시스템 개발(’20.6.~12.) → 시범운영(’21.1.~3.) → 보완·개선(’21.4.~5.) → 본격 운영(’21.6.~) → 모바일 및 통계분석시스템 구축(’22.1.)
주요 내용	창고별 재고 입·출고 관리, 가공·수송지시, 매출 등록, 보관·가공·수송 등 관리 비용 자동 산출·정산 등
수혜 대상	지자체, 정부양곡 보관창고, 도정공장, 운송업체, 수요자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자료제공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률상의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종합관리시스템의 보다 지속적·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의무수입양곡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생산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생 략) <신 설>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 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 료용 공급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u>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년~2004년, 2005년~2014년) 관세화를 유예하였음.

쌀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물량)¹⁹⁾의 총량에 해당하는 40만 8,700톤 규모의 쌀을 매년 미국, 베트남, 중국, 태국,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전량 국영무역 방식으로 국가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19) TRQ(Tariff Rate Quota)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TRQ 총량은 1995년 5만 1,307톤에서 2004년 20만 5,229톤, 2014년 40만 8,700톤까지 증량시켜 왔으며, 관세율은 5%임.

<최근 5년간 TRQ 쌀 국가별 도입현황(2019~2023년)>

(2023.6. 기준, 단위: 톤, 백미기준)

연분	원산지	가공	밥쌀	합계	비율
2019	미국	97,188	37,000	134,188	33%
	베트남	95,112	3,000	98,112	24%
	중국	176,400	—	176,400	43%
	태국	—	—	—	—
	호주	—	—	—	—
	소계	368,700	40,000	408,700	100%
2020	미국	93,804	38,500	132,304	32%
	베트남	55,112	—	55,112	14%
	중국	172,790	—	172,790	42%
	태국	26,994	1,500	28,494	7%
	호주	—	—	—	—
	인도	20,000	—	20,000	5%
	소계	368,700	40,000	408,700	100%
2021	미국	90,804	41,500	132,304	32%
	베트남	54,112	1,000	55,112	14%
	중국	157,195	—	157,195	38%
	태국	46,994	1,500	48,494	12%
	호주	15,595	—	15,595	4%
	소계	364,700	44,000	408,700	100%
2022	미국	26,190	10,000	36,190	12%
	베트남	64,012	1,000	65,012	21%
	중국	157,195	—	157,195	50%
	태국	35,594	3,000	38,594	12%
	호주	15,595	—	15,595	5%
	소계	298,586	14,000	312,586	0%
2023	베트남	34,212	—	34,212	29%
	중국	40,000	—	40,000	34%
	태국	25,394	3,100	28,494	24%
	호주	15,595	—	15,595	13%
	소계	115,201	3,100	118,301	1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전량 수입하여 판매하는 TRQ 쌀은 용도에 따라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로 나눌 수 있는데,

밥쌀용 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 지침」에 따라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의 입찰에 의하여 연중판매되며,

가공용 쌀의 경우 이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자 등에게 판매됨.

TRQ 쌀의 판매, 즉 국내 방출은 우리나라 쌀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 지침」 제11조²⁰⁾는 국내산 양곡 성출하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출물량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밥쌀용 수입쌀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방출하여 쌀값의 하락이 심화 되는 등²¹⁾ 우리나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1조(판매시기 및 가격) ① 시판용 수입쌀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중 정기적으로 판매한다. 다만, 국내산 양곡 성출하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출물량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21) 농축유통신문, “정부, 쌀값 폭락 상황 수입쌀 방출 논란”, 2022.9.21.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98>

이에 개정안은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쌀값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체계적으로 의무수입양곡을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인 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사. 미곡의 매입·판매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화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시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미곡 매입 물량은 해당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격리 미곡의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하고, 미곡의 가격이 하락·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매입·판매를 의무화하거나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어기구의원안 제16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 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농업협동조합이나</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u>적정가격의 실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u> <u>나</u> -----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농업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게 양곡을 매입 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 ----- -----.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 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을 기준으로 산 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 이 급격하게 변 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 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 입하게 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도 불 구하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 른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의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 다. 1. 미곡의 가격 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 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 이 우려되는 경 우: 농업협동조 합 등을 통해 해 당 연도에 생산	④ 제3항에도 불 구하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 동조합등에게 해 당 연도에 생산 되는 미곡에 대 한 수요량을 초 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 (이하 “초과생산 량”이라 한다)을 수확기(10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에 매입하게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 가격 은 공공비축미곡 의 매입 가격으 로 한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	④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양곡가 격안정제도의 실 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한 해당 연도에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	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해당 연도 단경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⑤ ----- -----	⑥ ----- -----	⑤ ----- -----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u>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u>,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u>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u> 관련된 <u>사항은</u>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⑦ (생략) <신설>	----- ----- --<u>매입·판매의 절차</u>----- ----- ----- ----- ---- <u>사항은</u> ----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 ----- --<u>매입·판매의 절차</u>----- ----- ----- ----- ---- <u>사항은</u> ---- ----- ----- ----- ----- -----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u> <u>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양곡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다.</u>	----- ----- --<u>매입·판매의 절차</u>----- ----- ----- ----- ---- <u>사항은</u> ----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이하 “시장격리”)은 미곡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할 조짐이 보일 때 정부가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6조제4항은 시장격리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²²⁾ 제3조는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요건으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미곡의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는 미곡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의 매입가격으로 정하고 있음.

22)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미곡의 매입 및 판매)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매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다.

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나. 단경기(7~9월, 햅쌀이 나오기 직전의 시기)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최근 5년 중 최저·최고 수치를 제외한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단 2020~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

제5조(미곡의 매입 절차 및 보관) ① 미곡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 절차를 준용한다. 매입 시기, 산지 여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통해 매입할 수 있다.

② 매입한 미곡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정부관리양곡 보관 방법을 준용한다.

시장격리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총 10회 시행하였는데,
정부는 2022년에 예상 초과생산량인 25만톤보다 많은 물량인 45만톤을
수확기(10월~12월)에 시장격리하여 수확기 쌀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쌀 시장격리 현황>

2005		2008		2009		2010		2014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	144천톤	-	100	340	566	86	86	163	240
2015		2016		2017		2021		2022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200	357	299	299	370	370	-	370	4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 시장격리 추진'

※ 전체란 '수확기(10~12월)와 수확기 이후(다음해 1~9월)에 실시한 시장격리를 모두 합한 물량'

<쌀 관련 기초 통계>

연 도	재배 면적 (천ha)	단수 (kg /10a)	평년 단수	생산량 (천톤)	신곡 수요량 (천톤)	과부족 (천톤)	수확기 가격 (원/20 kg)	단경기 가격 (원/20 kg)	시장 격리 (천톤)	공매 (천톤)
2005	980	490	488	4,768	4,508	260	35,103	37,355	144	52 (148)
2006	955	493	485	4,680	4,492	188	37,092	37,809	-	17 (136)
2007	950	466	483	4,408	4,429	△21	37,574	40,367	-	75 (168)
2008	936	520	496	4,843	4,431	412	40,606	37,701	100	- (8)
2009	924	534	501	4,916	4,378	538	35,715	32,909	566	-

연 도	재배 면적 (천ha)	단수 (kg /10a)	평년 단수	생산량 (천톤)	신곡 수요량 (천톤)	과부족 (천톤)	수확기 가격 (원/20 kg)	단경기 가격 (원/20 kg)	시장 격리 (천톤)	공매 (천톤)
2010	892	483	499	4,295	4,260	35	34,356	38,302	86	589 (647)
2011	854	496	500	4,224	4,188	36	41,517	40,491	-	207 (222)
2012	849	473	500	4,006	4,015	△9	43,423	44,104	-	150 (210)
2013	833	508	496	4,230	4,191	39	43,820	41,827	-	- (7)
2014	816	520	496	4,241	4,001	240	41,837	39,939	240	- (2)
2015	799	542	508	4,327	3,970	357	38,040	34,952	357	- (4)
2016	779	539	522	4,197	3,898	299	32,452	32,537	299	-
2017	755	527	529	3,972	3,822	150	38,303	44,367	370	140 (222)
2018	738	524	530	3,868	3,806	62	48,392	47,094	-	50
2019	730	513	530	3,744	3,756	△12	47,491	47,963	-	-
2020	726	483	530	3,507	3,671	△164	54,121	55,236	-	235 (311)
2021	732	530	521	3,882	3,614	268	53,535	42,549	450	-
2022	727	518	521	3,764	3,609	155	46,817	-	370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 수확기 가격 : 10~12월 평균 가격 / 2)단경기 가격 : 7~9월 평균 가격

3) () 내의 수치는 산물벼 인수도 물량을 포함한 물량

4) 2022.9월 수확기 대책 시에는 생산량 3,857천톤, 수요량 3,609, 초과생산량 248로 추정

개정안은 시장격리 미곡의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곡의 가격으로 하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① 미곡의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윤준병의원안) 또는
심의·의결(여기구의원안)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매입·판매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거나,

②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거나 미곡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미곡의 매입을 의무화하고 양곡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이원택 의원안),

이를 통해 시장격리조치가 적시에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동시에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별 주요 내용>

구 분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미곡 매입가격		시장격리 미곡의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가격으로 함	
미 곡 매 입	원칙	미곡의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또는 심의·의결)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 또는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초과(예상) 생산량 매입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① 미곡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한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단경기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 초과(예상) 생산량의 수확기(10월~12월) 매입 의무화
	예외	-	벼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 시 매입하지 않을 수 있음
미곡 판매		미곡의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등 또는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 판매 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양곡 가격의 지속적 상승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할 수 있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 중 시장격리 의무화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강은미의원안(의안번호 2121276),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2123232), 어기구의원안(의안번호 2123635),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23885), 위성곤의원안(의안번호 2124374), 안호영의원안(의안번호 2124431)에 대해서,

①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곡의 매입 가격으로 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등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률 개정의 실익이 적으며, 수급관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동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②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정부 재정이 운용되는 것은 재정지출의 예측가능성에 위반되며,

③ 미곡의 매입 및 판매의 의무화는 쌀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아. 인용 법률 제명의 현행화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이 미곡을 매입한 경우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로 등록하는 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2).

현 행	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 <u>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u> 」 제8조에 따라 <u>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u>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 ----- ----- ----- ----- 「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15조에 따른 <u>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u> 등으로 ----- -----.

2019. 12. 31. 종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2020.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은,

부칙 제10조²³⁾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양곡관리법」에서 농식품부장관이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를 명시 하더라도,

법률 제16858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부칙 제10조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지급대상자를 미곡 재배면적 조정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용 법률을 현행화하는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23)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 양곡 가격 결정 관련 제도 신설

개정안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혹은 적정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이원택의원안 제16조의4 등, 황명선의의원안 제15조 등, 어기구의의원안 제15조의2 등).

현 행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어기구의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 -----. 1.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u>3의2. “적정가 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 (직전 5년 중 최 저가격과 최고가 격을 제외한 평 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비용 및 물가상 승률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u>	제2조(정의) ---- ----- ----- -----. 1.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u>3의2. “기준가 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 (직전 5년 중 최 저가격과 최고가 격을 제외한 평 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비용 및 물가상 승률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u>	제2조(정의) ---- ----- ----- -----. 1.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u>3의2. “기준가 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 (직전 5년 중 최 저가격과 최고가 격을 제외한 평 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비용 및 물가상 승률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u>

현 행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여기구의원안
4.~7. (생 략)	<u>격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고시한 기준가격을 말한다.</u>		<u>격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고시 한 가격을 말한다.</u>
제3조(정부관리양곡 의 수급계획 수 립) ① (생 략)	제3조(정부관리양곡 의 수급계획 수 립)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관리양곡 의 수급계획 수 립) ① ~ ④ (생 략)	제3조(정부관리양곡 의 수급계획 수 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양곡수급계획 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 ----- ----- ----- -----.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14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양 곡의 적정 자급목 표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14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양 곡의 적정 자급목 표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 와 같음)		5. (현행 제4호 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제16조의4(적정가격)	제15조(양곡의 가격)	제15조의2(양곡가

현 행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보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적정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	보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인 양곡수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가격보장의 대상이 되는 품목과 양곡의 기준가격 등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격보장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	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

현 행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여기구의원안
	<u>지로 한정한다.</u> ②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은 국민의</u> <u>식생활에 중대한</u> <u>영향을 미치는</u> <u>쌀, 밀, 콩 등 적</u> <u>정가격보장제 대</u> <u>상 품목을 위원</u> <u>회의 심의·의결</u> <u>을 거쳐 매년 확</u> <u>정하고 이를 고</u> <u>시한다.</u> ③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은 적정가</u> <u>격을 위원회의</u> <u>심의·의결을 거</u> <u>쳐 매년 확정하</u> <u>고 이를 고시한다.</u> ④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은 적정가</u> <u>격보장제의 차액</u> <u>(적정가격과 시</u> <u>장가격의 차이를</u> <u>말한다)의 지급</u> <u>비율을 위원회의</u> <u>심의·의결을 거</u> <u>쳐 매년 확정하</u> <u>고 이를 고시한다.</u>	<u>정한다.</u> ④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은 제16조</u> <u>의3에 따른 양곡</u> <u>수급관리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 가</u> <u>격보장에 따른</u> <u>차액지급의 비율</u> <u>을 조정할 수 있</u> <u>고, 심의에 따라</u> <u>지급비율이 결정</u> <u>된 경우 이를 고</u> <u>시하여야 한다.</u>	<u>요한 양곡의 품</u> <u>목을 제16조의3</u> <u>에 따른 양곡수</u> <u>급관리위원회의</u> <u>심의·의결을 거</u> <u>쳐 매년 확정하</u> <u>고 이를 고시한다.</u> ③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은 기준가</u> <u>격을 제16조의3</u> <u>에 따른 양곡수</u> <u>급관리위원회의</u> <u>심의·의결을 거</u> <u>쳐 매년 확정하</u> <u>고 이를 고시한다.</u> ④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은 양곡가</u> <u>격안정제도의 차</u> <u>액(기준가격과</u> <u>시장가격의 차이</u> <u>를 말한다. 이하</u> <u>같다)의 지급비</u> <u>율을 제16조의3</u> <u>에 따른 양곡수</u> <u>급관리위원회의</u> <u>심의·의결을 거</u> <u>쳐 매년 확정하</u> <u>고 이를 고시한다.</u>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겨 비료값이 폭등하는 등 전 품목에 걸쳐 농업 생산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최근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벼재배농가의 소득은 하락(10a당 쌀소득: 2021년 78만 6천원 → 2022년 60만 6천원)하는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²⁴⁾이 있음.

실제로 통계청의 쌀 생산비조사에 따르면 10a당 소득은 2021년 785,867원에서 2022년 605,615원으로 22.9%(180,252원)가 감소하여 쌀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논벼(쌀) 수익성>

(단위: 원, %, %p)

구 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 10a 당 총수입(A)	1,294,243	1,171,736	-122,507	-9.5
□ 10a 당 생산비(B)	792,265	854,461	62,196	7.9
- 10a 당 경영비(C)	508,375	566,121	5,746	11.4
- 10a 당 내급비	283,889	288,340	4,451	1.6
□ 10a 당 소득(A-C)	785,867	605,615	-180,252	-22.9
- 소득률	60.7	51.7	-9.0	-
□ 10a 당 순수익(A-B)	501,978	317,275	-184,703	-36.8
- 순수익률	38.8	27.1	-11.7	-

* 통계청,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24) 한국농어민신문(2022.9.23.)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쌀생산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에서 올해 쌀 농가 수익은 661m²(1마지기, 200평)당 오히려 16만 4,750원의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산비는 65만 9,740원으로 지난해 52만 9,500원 대비 약 25%가 상승한 반면, 벼 판매수익은 70만 4,000원에서 49만 5,000원으로 30%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임.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 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이 약 1조 8,12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임.(한국농어민신문, “쌀값 이대로면 생산비도 못건진다’ 위기감 확산”, 2022.9.23.)

또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쌀의 과잉공급 문제로 인한 쌀 가격의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단위: kg)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전가구	67.2	65.1	62.9	61.9	61.8	61.0	59.2	57.7	56.9	56.7
- 농가	107.9	104.7	102.1	100.5	96.6	94.6	92.8	90.8	88.9	88.6
- 비농가	63.9	61.9	60.0	59.6	59.8	59.2	57.4	56.0	55.2	55.1

*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이에 각 개정안은 명칭 등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양곡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또는 적정가격(이하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보장제”)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보임.

<양곡 가격 결정 관련 개정안 비교>

구 분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명 칭	적정가격보장제	양곡 가격보장제	양곡가격안정제도
대 상 품 목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쌀, 밀, 콩 등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 품목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양곡의 품목
기 준	적정가격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기준 가격	기준가격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결 정 방 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 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 후 고시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김승남의원안(의안번호 2123078),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2123232), 여기구의원안(의안번호 2123635),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23885), 위성곤의원안(의안번호 2124374), 안호영의원안(의안번호 2124431)에 대해서,

첫째, 양곡가격보장제는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²⁵⁾과 유사한 제도로, 쌀 변동직불금은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25) 쌀 변동직불금 산식은 다음과 같음

▶ 쌀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 - (80kg 당 수확기 쌀 값)] × 85% - [80kg 당 고정직불금]
[폐지 직전 목표가격은 80kg 당 2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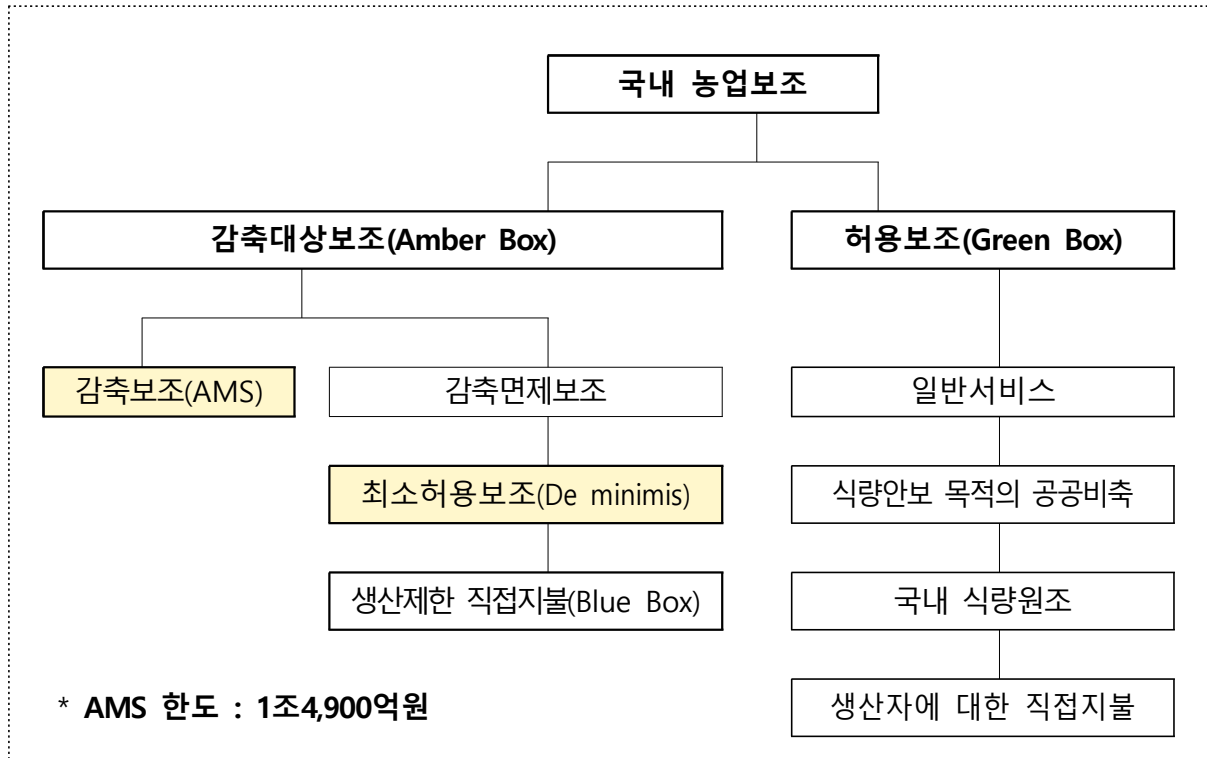
때 유사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둘째,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²⁶⁾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양곡가격보장제는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하여 농업협정
 및 회원국 양허에 따라 설정된 우리나라의 연간 감축대상 보조 한도
 (1조 4,900억원)를 초과²⁷⁾할 수 있어 WTO 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26) 2015년 및 2016년 동 제도에 따른 재원 소요는 아래와 같음

- (‘15) 30만톤 이상 초과생산되어 시장격리를 위한 예산 6,300억원이 소요되고, 변동직불금
 으로 7,000억원 지급
 (‘16) 2015년 과잉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0만톤 초과생산이 예상되어 시장격리 4,600
 억원 소요, 변동직불금은 감축보조 상한(1조4,900억원) 수준 지급

- 27) WTO의 농업보조금은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DM)-블루박스(BB)-그린박스(GB)’
 로 구분
- ① 감축대상보조(AMS): 생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로 농업협정 및 회원국 양허에 따라
 한도 내(한국 1조 4,900억원)로 지급하고 차후 협상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보조
 - * 농업협정 1조·6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89~’91년 보조실적을 바탕으로 한도액 설정
 - (시장가격지지) 정부수매, 최저가격제도 등으로 어떠한 정책이 시장가격지지인가는 당해 국
 가의 제도 운영방법과 그 효과에 의해 판단됨
 - (비면제 직접지불) 가격 또는 생산량과 연계된 직불로 목표 가격을 정해 놓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보조(예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소득
 보전직불제)
 - (기타 감축대상 보조) 농업생산, 가공, 유통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
 는 보조(예시: 비료판매가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지원 등)
 - ② 최소허용보조(DM : AMS와 동일한 성격이나, 무역왜곡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이나, 품목생산액 또는 농업총생산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해당 품목은 AMS에 전액 산입
 - * 농업협정 6.4조에 따라, 품목 특정인 경우 품목생산액의 10% 이내, 품목 불특정일 경우 농
 업총생산액의 10% 이내(‘20년 기준, 5.2조원)에서 지급 허용
 - ③ 블루박스(BB): 생산제한정책 하의 직접지불(우리는 지급실적 없음)
 - ④ 허용보조(GB): 농업협정 부속서2에 열거된 유형의 보조로,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
 여 감축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분류체계>



① 감축대상보조 (AMS)	② 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DM)	③ 블루박스 (Blue Box: BB)	④ 허용보조 (Green Box: GB)
-------------------	-------------------------------	--------------------------	---------------------------

차.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설치

개정안은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3조·제5조·제9조·제10조·제16조·제16조의3·제16조의4, 이원택의원안 제2조·제3조·제5조·제9조·제10조·제16조·제16조의3·제16조의4·제16조의5, 황명선의의원안 제3조·제5조·제9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3, 어기구의의원안 제2조·제3조·제5조·제9조·제10조·제15조의2·제16조·제16조의3·제16조의4).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어기구의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u><신 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3의2. “적정가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3의2. “기준가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기준가 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4.~7. (생 략)	4.~7. (현행과 같음)	4.~7. (현행과 같음)	4.~7. (현행과 같음)	4.~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관리 양곡의 수급계 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 의 수급계획 (이하 “양곡수 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야 한다.	제3조(양곡의 수 급계획 수립) ① ----- -----제16 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매년 양곡----- -----.	제3조(정부관리 양곡의 수급계 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16 조의3에 따른	제3조(양곡의 수 급계획 수립) ① ----- -----제16 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매년 양곡----- -----.	제3조(정부관리 양곡의 수급계 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16 조의3에 따른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양	③ (현행과 같 음)	③ ----- ----- 제16 조의3에 따른	③ (현행과 같 음)	③ ----- ----- 제16 조의3에 따른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여기구의원안
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 무회의의 심의 를 거친 후 대 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생 략)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1항에----- ----- -----.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1항에----- ----- -----.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 정)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생 략)	④ (생 략)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 정) ① ----- ----- ----- ----- ----- ----- 제16조 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 친 후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 -----.	④ (생 략)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 정) ① ----- ----- ----- ----- ----- ----- 제16조 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의 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	④ (생 략)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 정) ① ----- ----- ----- ----- ----- ----- 제16조 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	④ (생 략)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 정) ① ----- ----- ----- ----- ----- ----- 제16조 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의 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	② (현행과 같 음)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① (현행과 같 음) ② -----	② (현행과 같 음)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① (현행과 같 음) ② -----	② (현행과 같 음)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①~⑤ (현행 과 같음) ② -----	② (현행과 같 음)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① (현행과 같 음) ② -----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여기구의의원안
큰 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가격은 농림 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한다. ③~⑤ (생 략) 제10조(공공비축 양곡의 비축· 운용) ①·② (생 략) ③ 공공비축양 곡의 매입·판매 가격은 매입· 판매지역의 당 시 시장가격으 로 한다. ④ (생 략) 제16조(가격안정	----- 판매 가격과 판매시 기는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 ③~⑤ (현행 과 같음) 제10조(공공비축 양곡의 비축· 운용) ①·②(현 행과 같음) ③ ----- ----- 판매물 량은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 판매가격----- -----. ④ (현행과 같 음) 제16조(가격안정	----- 판매가격 과 판매시기는 제 16 조 의 3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 의 심 의 · 의 결 을 거쳐----- -----. ③~⑤ (현행 과 같음) 제10조(공공비축 양곡의 비축· 운용) ①·②(현 행과 같음) ③ ----- ----- 판매물 량은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 · 의 결을 거쳐 농림 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하고, 매입 · 판매가 격은----- -----. ④ (현행과 같 음) 제16조(가격안정	----- 판매 가격과 판매시 기는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 · 의 결을 거쳐----- -----. ③~⑤ (현행 과 같음) 제10조(공공비축 양곡의 비축· 운용) ①·②(현 행과 같음) ③ ----- ----- 판매물 량은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 · 의 결을 거쳐 농림 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하고, 매입 · 판매가 격은----- -----. ④ (현행과 같 음) 제16조(가격안정	----- 판매 가격과 판매시 기는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 · 의 결을 거쳐----- -----. ③~⑤ (현행 과 같음) 제10조(공공비축 양곡의 비축· 운용) ①·②(현 행과 같음) ③ ----- ----- 판매물 량은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 · 의 결을 거쳐 농림 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하고, 매입 · 판매가 격은----- -----. ④ (현행과 같 음) 제16조(가격안정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을 위한 양곡 의 수급 관리) ①~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 라 미곡을 매 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 당 연도에 생 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 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 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 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 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 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 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을 위한 양곡 의 수급 관리) ①~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 축산식품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1. 미곡의 가 격이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 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	을 위한 양곡 의 수급 관리) ①~③ (생 략) ④ (생 략)	을 위한 양곡 의 수급 관리) ①~③ (현행 과 같음) ④ (현행과 같 음)	을 위한 양곡 의 수급 관리) ①~③ (현행 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양 곡가격안정제 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1. 미곡의 가 격이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정 하는 기준 이 상으로 폭락하 거나 폭락이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한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신 설>		⑤ (생 략)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⑤ -----	⑥ -----	⑤ -----	⑤ -----
	-----	-----	-----	-----
	-----	-----	-----	-----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어기구의의원안
및 수요량 추정 의 방식,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판매 물량의	판매의 절차-	판매의 절차-	판매의 절차-	판매의 절차-
산정, 매입·	-----	-----	-----	-----
판매의 시기·	-----	-----	-----	-----
절차, 매입물	-----	-----	-----	-----
량의 보관 등	-----	-----	-----	-----
매입 또는 판	-----	-----	-----	-----
매에 필요한	-----	-----	-----	-----
사항과 생산자	사항은 -----	사항은 -----	사항은 -----	사항은 -----
단체대표등과	-----	-----	-----	-----
의 협의기구	-----	-----	-----	-----
구성·운영 및	-----	-----	-----	-----
협의 절차에	-----	-----	-----	-----
관련된 사항은	-----	-----	-----	-----
농림축산식품	-----	-----	-----	-----
부장관이 정한다.	-----	-----.	-----.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 과 같음)	⑦·⑧ (현행 제6 항 및 제7항과 같음)	⑥·⑦ (현행 과 같음)	⑥·⑦ (현행 과 같음)
<신 설>		⑨ 농림축산식 품부장은 민 간 재고 부족 등으로 양곡의 가격이 지속적 으로 상승하는 경우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의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여기구의의원안
<신 설>		<u>결을 거쳐 정</u> <u>부관리양곡을</u> <u>판매할 수 있</u> <u>다.</u>		
		제16조의4(적정가	제15조(양곡의 가	제15조의2(양곡
		격보장제) ①	격 보장) ①	가격안정제도)
		(생 략)	(생 략)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	② 가격보장의	②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국	대상이 되는	품부장관은 양
		민의 식생활에	품목과 양곡의	곡가격안정제
		중대한 영향을	기준 가격 등	도가 필요한
		미치는 쌀, 밀,	은 제16조의3	양곡의 품목을
		콩 등 적정가	에 따른 양곡	제16조의3에
		격보장제 대상	수급관리위원	따른 양곡수급
		품목을 위원회	회의 심의를	관리위원회의
		의 심의·의결	거쳐 확정하고	심의·의결을
		을 거쳐 매년	이를 고시한	거쳐 매년 확
		확정하고 이를	다.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	③ (생 략)	③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적		품부장관은 기
		정가격을 위원		준가격을 제16
		회의 심의·의		조의3에 따른
		결을 거쳐 매		양곡수급관리
		년 확정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
		를 고시한다.		·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	④ 농림축산식	④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적	품부장관은 제1	품부장관은 양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신 설>		정 가격보장 제 의 차액(적정 가격과 시장가 격의 차이를 말한다)의 지 급비율을 위원 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매 년 확정하고 이 를 고시한다.	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가격보 장에 따른 차액 지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 고, 심의에 따 라 지급비율이 결정된 경우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곡 가격안정 제 도의 차액(기준 가격과 시장가 격의 차이를 말 한다. 이하 같다) 의 지급비율을 제 16 조 의 3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 16 조 의 3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 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 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에 양 곡수급 관리 위 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	제 16 조 의 3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① 양곡의 수 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 에 양곡수급관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	제 16 조 의 3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① 양곡의 수 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 요 사항을 심의 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에 양 곡수급 관리 위 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제 16 조 의 3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 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 한 중요 사항 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에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여기구의의원안
	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재배면적의 조정 5. 그 밖에 이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	결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재배면적 조정 5. 그 밖에 이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재배면적의 조정 5. 그 밖에 이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가격 및 수급	결한다. 1.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5.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재배면적의 조정 6. 그 밖에 이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여기구의원안
	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여기구의의원안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2. 기획재정부	2. 기획재정부	2. 기획재정부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민생경제정책관	민생경제정책관	민생경제정책관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여기구의의원안
<신 설>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농작물 재배 지원 등)	제16조의5(미곡의 수급안정 및 농작물 재배 지원 등)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농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어기구의의원안
	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현행법 제16조제5항은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동 위원회에서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음.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 사항>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시행 이후 수급 동향
- ④ 법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
- ⑤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량 조정
- ⑥ 그 밖에 양곡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자료: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명칭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로 바꾸고, 설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양곡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 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의 사항²⁸⁾과 기존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논의

사항들을 심의²⁹⁾ 또는 심의·의결³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2123232), 어기구의원안(의안번호 2123635),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23885), 위성곤의원안(의안번호 2124374), 안호영의원안(의안번호 2124431)에 대해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할 경우 양곡수급정책의 적시성·탄력성 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28) 이원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및 어기구의원안

29) 윤준병의원안 및 황명선의원안

30) 이원택의원안 및 어기구의원안

카.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개정안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이하 “논타작물”³¹⁾)의 재배면적 관리 및 재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4, 이원택의원안 제16조의5, 어기구의의원안 제16조의4).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어기구의의원안
<신 설>	제16조의4(미 곡의 수급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	제16조의5(미 곡의 수급안정 및 타 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벼 이외의 작	제16조의4(미 곡의 수급안정 및 타 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은 위 원 회 의 심 의 · 의 결 을 거 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 다)의 재배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

31) 이원택의원안의 경우 논타작물이 아닌, 벼 이외의 작물인 “타작물”과 관련된 규정임. 다만 이원택의원안의 경우에도 미곡의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별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논타작물”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음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타작물	물(이하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참여하여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및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면적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인등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나 휴경 등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신곡 수요량은 2013년 419만 1천톤에서 2022년 360만 9천톤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벼 재배면적 관리를 통하여 쌀의 적정 생산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쌀 관련 기초 통계>

연 도	재배면적 (천ha)	단수 (kg/10a)	평년 단수	생산량 (천톤)	신곡 수요량 (천톤)	과부족 (천톤)	수확기 가격 (원/20kg)	단정기 가격 (원/20kg)	시장 격리 (천톤)	공매 (천톤)
'13	833	508	496	4,230	4,191	39	43,820	41,827	-	- (7)
'14	816	520	496	4,241	4,001	240	41,837	39,939	240	- (2)

연 도	재배 면적 (천ha)	단수 (kg /10a)	평년 단수	생산량 (천톤)	신곡 수요량 (천톤)	과부족 (천톤)	수확기 가격 (원/20 kg)	단경기 가격 (원/20 kg)	시장 격리 (천톤)	공매 (천톤)
'15	799	542	508	4,327	3,970	357	38,040	34,952	357	- (4)
'16	779	539	522	4,197	3,898	299	32,452	32,537	299	-
'17	755	527	529	3,972	3,822	150	38,303	44,367	370	140 (222)
'18	738	524	530	3,868	3,806	62	48,392	47,094	-	50
'19	730	513	530	3,744	3,756	△12	47,491	47,963	-	-
'20	726	483	530	3,507	3,671	△164	54,121	55,236	-	235 (311)
'21	732	530	521	3,882	3,614	268	53,535	42,549	450	-
'22	727	518	521	3,764	3,609	155	46,817	-	370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 수확기 가격 : 10~12월 평균 가격 / 2)단경기 가격 : 7~9월 평균 가격

3) () 내의 수치는 산물벼 인수도 물량을 포함한 물량

4) 2022.9월 수확기 대책 시에는 생산량 3,857천톤, 수요량 3,609, 초과생산량 248로 추정

이를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하여 쌀
가격을 정상화하고 콩 등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했다는 평가가
있음.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추진 실적	(‘18) 26,447ha (‘19) 28,610ha (‘20) 21,469 / 연평균 25,509ha
벼 재배면적	(‘17) 754,713ha, (‘20) 726,432, (‘21) 732,477
콩 식량자급률	(‘17) 22.0% → (‘18) 25.5 → (‘19) 26.7 → (‘20) 30.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은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개정안별 주요 내용>

구 분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타작물 재배 지원 계획 관련	-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반영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매년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시행	-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매년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
타작물 범위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 작물 중 장관이 정한 주요 작물	벼 이외의 작물	벼 이외의 작물
재정적 지원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해 타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등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등
위임규정	대통령령으로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2122285), 김승남의원안(의안번호 2123078),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2123232), 어기구의원안(의안번호 2123635),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23885), 위성곤의원안(의안번호 2124374), 안호영의원안(의안번호 2124431), 최춘식의원안(의안번호 2125405)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되 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조문은 현행 고시(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 사항)에 두는 것이 적절하고,

② 휴경 의무 부여(신정훈의원안 제16조의5제4항, 어기구의원안 제16조의4제4항)는 현행법 제16조의2³²⁾에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32) 「양곡관리법」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타. 양곡 생산자 관련 단체 설립 근거 규정 마련

개정안은 양곡의 생산자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와 생산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원택의원안 제16조의6 신설).

현 행	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16조의6(단체의 설립) ① 양곡의 생산자는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와 생산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민법 제32조³³⁾에 따라 양곡 생산자는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생산자의 공동이익 도모, 유통의 선진화, 고품질 쌀 생산기술 발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생산자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³⁴⁾

개정안은 이와 같은 양곡 생산자단체 중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3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4)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생산자의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곡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격리, 가격보장 등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차원에서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등 생산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2123232),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23885)에 대해서,

양곡의 생산자는 현재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단체설립의 근거를 두는 것은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파.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근거 마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미곡의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한 미곡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윤준병 의원안 제16조제1항·제16조의5·제16조의6 신설, 황명선의의원안 제16조의4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②~⑦ (생략) <u><신설></u>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②~⑦ (생략) <u>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①</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수요, 재고 등 수</u>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⑦ (생략)

현 행	윤준병의원안	황명선의원안
	<u>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u>	

현 행	윤준병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신 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36조(과태료) ① ----- ----- ----- -----.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현 행	윤준병의원안	황명선의원안
<u><신 설></u> <u>1. ~ 6. (생 략)</u> <u>② (생 략)</u>	<u>1. (생 략)</u> <u>2. (생 략)</u> <u>3. 제16조의5제3항을 위</u> <u>반하여 특별한 사유</u> <u>없이 통계나 자료의</u> <u>입력 또는 제출 요청</u> <u>에 따르지 아니한 자</u> <u>4. ~ 9. (현행 제1호부</u> <u>터 제6호까지와 같음)</u> <u>② (현행과 같음)</u>	

쌀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쌀값이 하락하고 농업인 및 시장에 불안심리가 확산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에 쌀 수급과 관련된 정확한 예측 및 관측을 통하여 체계적인 시장격리 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을 위하여 ① 수확 전 생산 조절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 이를 정확한 예측 및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③ 미곡 예상생산량 추정을 기반으로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³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35) 미곡 공급량 선제적 조절 사업 : ①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미곡을 매입·판매하게 하는 사업, ② 이로 인한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③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것으로,

정확한 예·관측을 바탕으로 체계적·선제적으로 쌀 수급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관련 사업>

구 분	내 용
시스템 명	쌀 수급예측시스템
2024년 예산	10억원
사업 내용	- Krei 관측센터에 쌀 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 - 통계·관측 DB, 모형을 활용해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 재배 면적·용도 전환 물량 도출 등 수급정책 관련 데이터 현업 지원 - 사후 시장격리에서 선제적 수급정책으로 전환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하. 양곡유통업의 육성 근거 마련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미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안은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하여도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양곡유통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22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u> 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u>양곡</u> ----- ----- <u>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u> ----- ----- <u>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u>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u>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u>양곡의 유통기능</u> ----- ----- <u>미곡종합처리장, 콩종합처리장 등 양곡을</u> ----- ----- <u>양곡의 매입에</u> ----- -----

현 행	윤준병의원안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현재 양곡유통업 지원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뿐만 아니라
콩종합처리장(SPC) 등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콩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과 달리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콩의 전체 생산량 대비 정선 처리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콩종합처리장 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콩종합처리장 등의 추가 설치 필요성>

- ※ 2022년산 기준 콩의 전체 생산량 13만톤 중 5.2만톤 정선 처리(추정)
2027년 콩 생산량 목표치인 14.7만톤 기준 정선 미처리 물량은 9.5만톤(예상)
- ※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 당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 콩종합처리장 1개소 당
총사업비 125억원 이상으로 기간산업 시설에 해당하는바, 추가 설치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 필요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유통업의 육성 대상을 미곡에서 양곡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양곡유통시설 및 양곡 매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밀·콩 등의 양곡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등 규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22조의2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최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쌀의 과잉공급 문제로 인한 쌀 가격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단위: kg)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전가구	67.2	65.1	62.9	61.9	61.8	61.0	59.2	57.7	56.9	56.7
- 농가	107.9	104.7	102.1	100.5	96.6	94.6	92.8	90.8	88.9	88.6
- 비농가	63.9	61.9	60.0	59.6	59.8	59.2	57.4	56.0	55.2	55.1

*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밀·콩 등 국산 식량작물에 대한 소비기반을 조성하고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쌀 소비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의 경우 68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쌀 소비기반 구축 사업 내역사업>

쌀 소비기반구축, 라이스컨소시엄 지원, 밀 가공확대지원,
밀·콩 등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천원의 아침밥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과 국산 양곡
사용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산 식량작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논타작물 정책 강화 방향에 맞춰 쌀 이외의 양곡에 대한
소비촉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